

홍보자료 II

해외 여행객을 위한
동물·축산물 검역 안내서

해외 여행객을 위한 동물·축산물 검역 안내서

해외 여행객을 위한 동물·축산물 검역 안내서



해외로부터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은 우리나라의 축산업과 공중위생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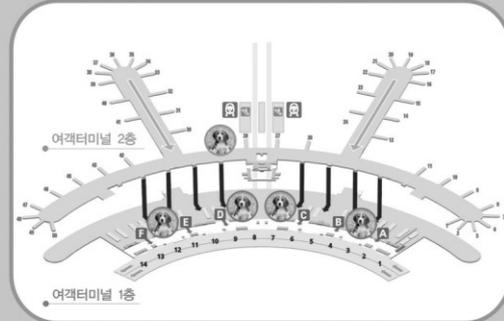
- 목차** |
- 02 동물 검역대상물품
 - 03 입국검역(휴대 동·축산물)
 - 03 입국검역(개, 고양이)
 - 04 휴대 애완동물, 토끼, 햄스터
 - 가축농장 방문자 및 축산인
 - 05 입국검역(개, 고양이 신규규정
(2011.12.01 실시))
 - 06 출국검역(휴대 동·축산물)
 - 06 출국검역(개, 고양이)
 - 08 문의 및 신고전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인천공항 동물·축산물 검역 사무실 위치 및 전화

수출 동물·축산물 민원사무실 | 032) 740-2660~2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2층 2106호)

수입 동물·축산물 민원사무실 | 032) 740-2670~1
가축농장 방문자 및 축산인 신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입국장)



동물검역에 관한 상세정보는 우리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또는 동물검역카페 <http://cafe.naver.com/iaaq>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문의내용	전화번호
우편 동물·축산물의 수출·입검역	국제우편물센터 ☎ 032-740-2683~4
화물 동물·축산물의 수출·입검역 (화주가 동반하지 않고 해외로 보내는 경우)	세관청사내 동물검역사무실 ☎ 032-740-2680
수·출입검역 (인천항을 이용 할 경우)	인천항사무소 ☎ 032-891-1362



홍보자료 II

해외 여행객을 위한
동물·축산물 검역 안내서



동물검역대상 물품(검역물)

관련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 동물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및 소시지, 햄, 족발, 육포, 장조림, 삶은고기 등 식육가공품
- 녹용, 뼈, 가죽 등 동물의 생산물
- 우유 및 치즈, 버터 등의 유가공품
- 알 및 난백, 난분 등 알가공품
-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역류
- 동물사료, 기구, 깔짚 등

※ 상업적 수입뿐만 아니라 개인소비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도 포함됩니다.



입국 검역

● 금지품은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 등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수입금지지역) 등 으로부터 해당 질병과 관련된 검역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항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검역물이라도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수입가능지역에서 검역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검역관이 발급하고 검역물의 수입 위생조건에 따른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하여 검역을 받으세요!

검역물을 가져오신 경우 세관신고서에 동·축산물 휴대여부를 체크하시고 입국장내의 동물검역사무실(국립수의과학검역원)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검사결과 불합격되면 폐기·반송!

검역관의 검사결과 현물과 검역증명서 등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개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되어 해당 물품은 반송·폐기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화주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불법 동물·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부과!

만일 신고하지 않고 동물·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고양이 (현행법령)

2011년 12월 1일부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됩니다. (후면 참조)

반려동물(개, 고양이)은 입국시 동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출발전에 미리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도착하여 검역 가관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전 미리 준비하세요!

연령	90일령 이상		90일령 미만	
	구비서류	검역기간	구비서류	검역기간
광견병 발생국	검역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사실기재)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1일 이내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당일
		광견병 예방접종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이 경과될 때까지 광견병예방접종증명이 불가능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 후 30일		
광견병 비발생국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1일 이내 *광견병 비발생 지역 증명서		

※ 각리검역을 위한 운송 및 검역기간중의 사인관리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수 : 4두이하

■ 광견병 비발생국 (2010.11월 현재)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알바니아, 윌리스프투나, 도미니카공화국, 마케도니아,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3

●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검역증명서**
수출국의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및 건강증명서**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서류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반입자의 성명
 2. 검역관(수의사)의 성명 및 서명
 3. 광견병 백신을 접종한 경우 : 접종일자, 면역유효기간
- ※ 말레이시아의 개, 고양이와 호주의 고양이는 상대국 검역증명서에 나뉘, 핸들라 바이러스 관련 별도 조치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니 사전에 검역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 이외의 수출국 지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휴대 애완동물, 토끼, 햄스터, 페렛**

기타동물의 수입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수출국 정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해당동물을 계류장으로 운반하여 5일간 계류검역을 실시합니다.
(휴대 애완동물의 경우 5일 이내)

 **가축농장 방문자 또는 축산인 등**

해외여행시 꼭 알아주세요!

해외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하였거나 가축과 접촉한 여행객, 축산인 및 축산업 관련 종사자는 도착시 입국장내의 동물검역 사무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시 주의사항

- 여행중**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신재지역인 중국, 동남아 등을 여행 할 경우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의 휴대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착시**
 - 국내도착 → 입국심사 → 수화물 수회 → 동물검역사무실신고 → 교육 및 소독 → 세관신고서 제출 → 세관심사 → 입국장 밖으로 이동
 - 도착시 공항의 입국장 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동물검역사무실)으로 반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장소 위치 및 전화번호:
1층 입국장 8번 수취대 앞 (032-740-2690)
1층 입국장 15번 수취대 앞 (032-740-2694)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동남아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에는 귀국 후 5일간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착후**

 **2011년 12월 1일부터**
개·고양이의 수입검역방법이 바뀝니다.

새롭게 변경된 개·고양이 검역방법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견병 권고사항에 맞춘 국제수준의 검역방법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중이며 국내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광견병 발생국 (90일령 이상만 해당)

국가	현행	변경후 2011.12.01부터
구비 서류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검역증명서
검역 요건	광견병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칩 이식 • 광견병예방접종 • 광견병중화항체 검사결과



2. 광견병 비발생국 또는 90일령 미만의 개·고양이

국가	현행	변경후 2011.12.01부터
구비 서류	검역증명서 또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건강증명서)	검역증명서
검역 요건	-	마이크로칩 이식

●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검역증명서**
수출국의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반입자의 성명
2. 검역관의 성명 및 서명
3. 광견병 백신을 접종한 경우 : 접종일자(면역유효기간)
4. 마이크로칩 번호

- **마이크로칩 이식** : 광견병예방주사 접종전 ISO규격 11784 또는 11785)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합니다.
-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결과**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광견병중화 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하고 중화항체가는 최소 0.5IU/ml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국제공인검사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동수** : 4두 이하

출국 검역

휴대 축산물·동물

● 도착국가의 검역요구조건에 따릅니다.

휴대축산물 및 동물의 수출검역기준은 도착국가의 검역요구 조건에 따릅니다. 해당국가의 대사관 등에 검역요건을 먼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수수료(한금)

구 분	수수료	비 고
개 및 고양이	1만원	신청건강 동물의 검역물
토끼, 기금류, 꿀벌	3만원	
그 밖의 동물	2만원	
동물외의 검역물	2만원	



개·고양이

해외로 나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공항(항만)에 위치한 동물검역기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출국수속전 동물검역을 받으세요!

출국당일 최소 출국 3시간 전 인천공항 2층의 동물검역민원실에서 검역신청을 합니다. 이때 검역받을 동물(개·고양이 등), 여행자의 여권, 비행기 E-TICKET, 구비서류 및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Q. & A

Q. 민원 출발시간이 새벽 또는 저녁 늦은 시간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수입국가별로 기준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출국 2일전부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인천공항이 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여행객의 집에서 가까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사무소)에서 동물 검역증을 발급받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바로 출국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원의 위치는 「www.nvms.go.kr」→검역원소개→조직구성및역할, 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사항은 항공사로 문의해 주세요.

- 동물수송사전에약은 무엇인가요?
- 기내탑승은 가능한가요?
- 케이지의 크기제한은?
- 소프트케이지도 괜찮은가요?
- 탑승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수출동물 검역민원실의 업무시간(공휴일 포함)은 오전9시~저녁6시까지입니다.

● 구비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국가별 요건
① 동물건강증명서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①(90일미만)/②(90일이상) 유럽연합 ②,③,④,⑥ 일본,대만 ②,③,④,⑤,⑥
②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접종후 30일 경과하고 면역유효기간내 출국가)	
③ 광견병항체검사결과	
④ 마이크로칩	
⑤ 사진수입허가서	
⑥ 국가별 일정양식의 부속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간강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반출자의 성명
2. 수의사의 성명 및 서명
3. 광견병 접종일자 (면역유효기간)

※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별 검역규정 및 필요서류는 계속적으로 변경되오니 최신의 자세한 검역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국가의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원 홈페이지 [www.nvms.go.kr] 국가별 개·고양이 검역절차에서도 간략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물검역증명서는 2부 발급됩니다.

개·고양이에 대한 임상검사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동물검역증명서(한국어·영어 병용)를 2부 발급하여 드립니다. 동물검역증명서는 출국수속시 항공사에 제시하고 상대국가의 동물검역시 제출합니다.

